



연 세 대 학 교

정보통신처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주의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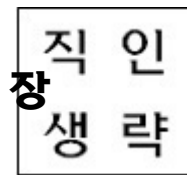
1. 관련: 저작권법 제125조(손해배상의 청구), 제136조(벌칙), 제141조(양벌규정)
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(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책임)
2. 최근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저작권 보호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 **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며,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.** 또한, 소속기관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현황을 점검하시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우리 학교는 교육, 연구 및 행정 업무 등 범용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“범용 소프트웨어”로 분류하고 캠퍼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의 라이선스 정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. 상세 품목은 정보통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* 정보통신처 홈페이지(yis.yonsei.ac.kr)→IT SERVICE→소프트웨어(교내 접속)
4. 범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제품(Oracle VM VirtualBox Extension Pack, Rhino, TeamViewer 등)은 저작권 침해 대상이며 적법한 라이선스 보유 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. 학내에서 사용 중인 모든 PC에는 사용약관을 확인 후 정품 소프트웨어만 설치하여 주시고, **불법 소프트웨어 설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안내 사항
 - 가.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
 - 1)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
- 복제권, 공중송신권, 배포권 등을 침해한 경우
 - 2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
- 불법 소프트웨어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
 - 3) 불법 사용 범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
 - 나.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유형
 - 1) 일반 사용자 불법 복제
- 개별 복사본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
 - 2)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
- 허가되지 않은 복사본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행위
 - 3) 비영리 개인에게 무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기관에서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

- 4) P2P 및 웹하드를 통한 상업용 디지털콘텐츠(드라마, 음악, 영화 등)를 무단 공유하는 행위
- 5) 하위 제품의 버전을 구매하여 상위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행위
- 6) 이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

다.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소프트웨어

- 1) 프리웨어: 무료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“비영리 개인에게 한함” 등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약관 확인 후 설치.
- 2) 세어웨어: 저작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허락한 소프트웨어로 업무용 PC에서 사용하는 등의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.
- 3) 번들: PC를 구매할 때 해당 PC에서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다른 PC에서 사용할 수 없음. 끝.

정 보 통 신 처



수신자 교내 전 기관

11/10

주임 **성혜선**

정보전략팀장 **박상덕**

정보통신부처장 **고정길**

정보통신처장 **김현중**

협조자